
2 0 2 0

부천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1. 1.

Contents

I. 추진배경	3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4
III. 인권경영 추진경과	8
IV. 인권영향평가 개요	11
V.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분석	14
VI. 최종 심의 및 환류	25
붙임1.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27
붙임2. 인권경영규정	75
붙임3. 인권경영헌장 선언문	85

2020. 부천도시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I 추진배경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수용(2018년)
- 인권경영 헌장 선언 및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2018년)
-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규정」 제정(2019년)
- 「인권경영실천협약체」 업무협약 체결(2020년)

2. 추진목적

-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함은 물론,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
- 모든 경영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요, 성차별, 법규위반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인권경영을 정착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영활동에 따른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사전 파악·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3. 기관장의 인권경영 추진의지

☞ “인권경영실천협약체 협약을 통해 **인권보호와 존중·상호 신뢰에 대한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인식 제고와 인권경영 확산 노력**”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전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고 지역주민, 협력기관,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예방적인 사전 갈등관리가 중요해 지므로 인권경영을 내실화하기 바람**”

II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 및 주요활동

 <p>1단계</p>	<p>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정책 선언 및 계획 수립 3. 공사 내 각 부서(팀) 확산 4. 공사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p>2018년 ~ 지속추진</p>
 <p>2단계</p>	<p>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지표 고유화 설계 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지표 설계 1-3. 지표 설계(안)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2.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5. 최고 경영진에 보고 및 대내외 공개 	<p>2019년 ~ 보완·개선 지속 추진</p>
 <p>3단계</p>	<p>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및 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경영(사업) 실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추진 1-2. 인권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사업 선정 예방 조치 2.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p>2019년 ~ 보완·개선 지속 추진</p>
 <p>4단계</p>	<p>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 구제절차 수립 3. 구제절차 시행 4.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p>2019년 ~ 보완·개선 지속 추진</p>

1. 인권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내부 조직체계

- 전담(총괄)부서 지정 → 전사적 참여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
- 총괄부서명 : 경영기획부
- 실무협의체 : 총 15명

(2020. 11. 기준)

부서			인원	관련분야	부서			인원	관련분야
경영	전략기획팀	2명	2명	인권경영	스마트도시정보부	3명	3명	보안·개인정보 BIS, 엔지니어링 등	
	운영지원팀	2명	2명	노무, 복무, 복지	도시개발부	1명	1명	개발사업 일반	
	인재육성팀	1명	1명	인사	안전기술팀	1명	1명	산업안전, 친환경	
	재무회계팀	1명	1명	계약	사업부서별	4명	4명	주차·체육·레포츠·공공	

- 주요임무

-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시행을 위한 협의체 역할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영향 자체평가 및 개선과제 이행
- 인권경영 확산 전파 및 인권존중 캠페인 참여 등



○ 인권경영 실천협의체(부천도시공사-인천 연수구시설공단-시흥도시공사) 구축

-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가치 전파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사업 추진, 인권침해 관행 개선 등 공동 협력



2.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 구제 기구 설치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 실행력 강화**

- 인권경영 추진방향 설정, 인권영향평가, 피해자 구제 등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권경영 내실화 제고**

- 인권 전문가, 노동조합 추천자, 공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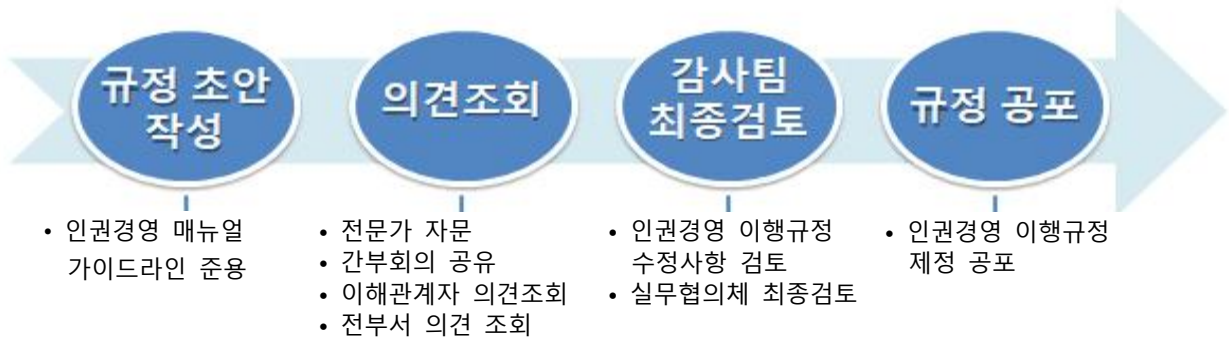
○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기능 및 임무**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계획, 제도,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결정한 사항

○ 구성 : 5명

성명	분야	비고
최 ○ ○	청렴·부패, 인권경영시스템	시정연구원장
신 ○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노조 추천자
김 ○ ○	사회적약자 인권	시민활동가
박 ○ ○	소비자 및 지역주민 인권	당연직
김 ○ ○	인권경영 총괄부서장	당연직

3. 인권경영 제도 구축



○ 인권경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1장	총 칙	① 이행규정 목적 ② 주요 용어의 정의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① 고용상의 비차별 ②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③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④ 산업안전 보장 ⑤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⑥ 구제조치의 노력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기본원칙 반영>
제3장	인권경영 체계	① 인권경영 헌장 ② 기본계획의 수립 ③ 담당 부서 및 역할 ④ 인권교육 등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①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②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③ 소집 및 회의 등	
제5장	인권의 구제	①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②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③ 조사의 방법 ④ 신고인의 신분보장 ⑤ 시정과 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 법 및 규칙준용>
제6장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영향평가 ②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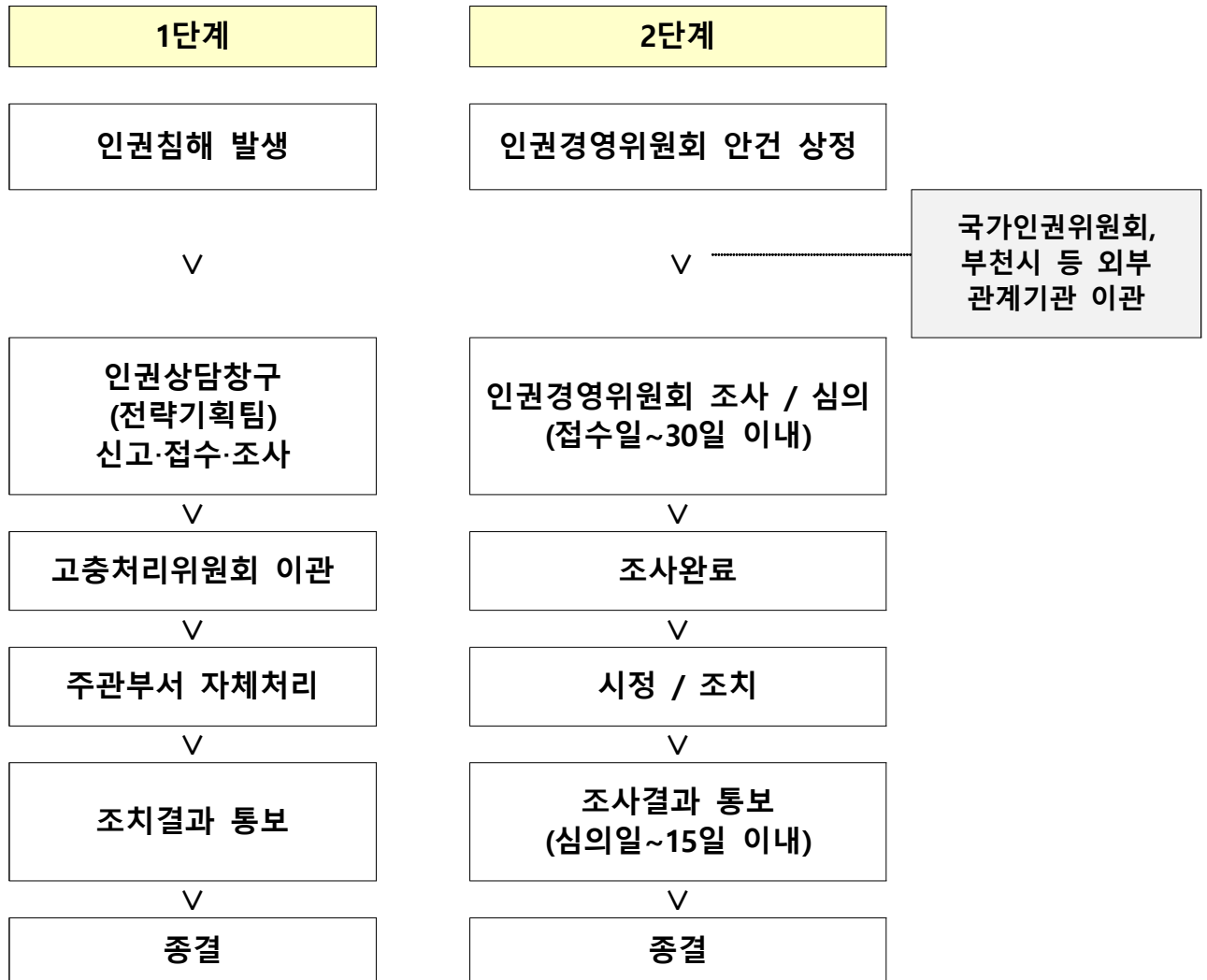
○ 인권경영헌장 선언 재검토

- 인권 이슈의 지속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선언 재검토 실시
-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선언의 주체, 공사 미션·비전 등 「9개 분야 이행 다짐」 기존 항목을 재검토해 공사 경영전략체계도와 부천형 뉴딜 계획에 따른 신규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정	우리는 「 <u>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효율적 시설관리와 편의제공</u> 」을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 <u>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u> 」을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공사 미션변경에 따른 수정
추가	하나, 우리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u>첨단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가치를 창출한다.</u>	공사 미션 및 부천형 뉴딜 반영한 항목 추가

4.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 제공

○ 인권침해 구제 절차 규정화



Ⅲ 인권경영 추진경과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2018 ~ 2019년)

○ 인권존중 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전담부서 지정 및 인권지킴이 실무협의체 구성
- 인권경영정책 실행 전반의 의사결정 기구「인권경영위원회」구성 운영
- 인권경영규정 제정(2019. 10. 29.)을 통한 실행 인프라 강화

○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 노력**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포(2018. 12. 10.)
- 맞춤형 인권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평가(BSC)를 통한 인권경영 추진결과 반영
- 인권경영 외부 협력기업 및 기관 확산
- 인권경영규정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외부 공개·전파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권리구제 절차 운영
 - ※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고충처리시스템과 연계한 구제절차 추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의 잠재적 인권리스크 가능성 파악 및 사전 예방조치 실행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2020년)**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개선사항 조치**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유화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준수 감시 장치 마련
- 고객접점 체육강사 설문조사 등 인권의식 실태 점검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등

○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고유지표화 추진**

-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첫 실시
-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계약업체 등)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강화
- 세부내용 아래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결과 기재

○ **인권경영 실천협의체(부천도시공사-인천 연수구시설공단-시흥도시공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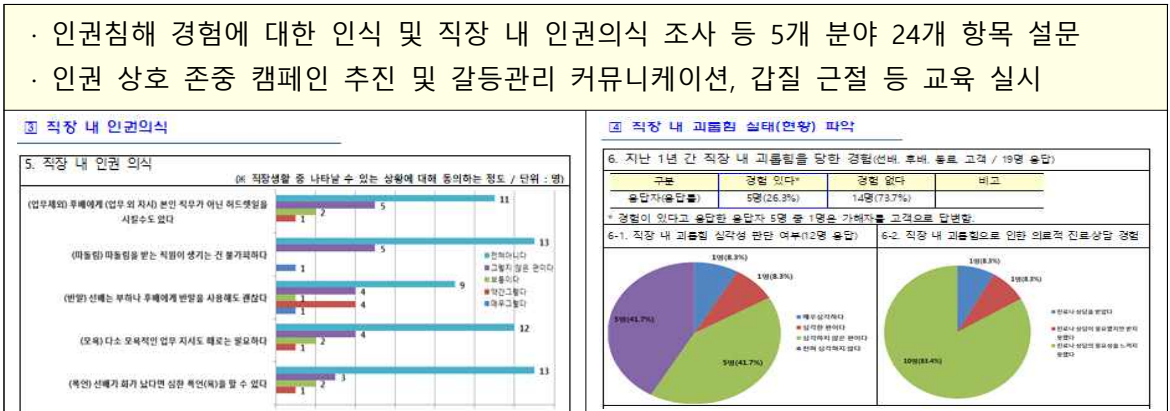
- 지역사회 인권거버넌스 구축 및 인권가치 전파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사업 추진, 인권침해 관행 개선 등 공동 협력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그 간의 인권경영 추진 실적 보고 및 의견 수렴
- 인권영향평가지표 설계(안) 검토 및 인권영향평가 최종평가 심의
- 인권경영헌장 개정 자문 및 심의, 청렴(인권) 이행서약서 심의 등

○ 기관의 특성과 연계한 인권경영의 주요쟁점 및 구체적인 사례 도출

- 사회적 스포츠 폭행 이슈로 인한 체육강사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소비자 권익 증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장치 개발 무인주차장 설치

· 무인화 기기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과 장벽이 발생
· 농아인 협회 조사 결과 무인 주차장 이용이 가장 불편하고 콜센터를 통한 음성대화 역시 청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어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수어통역장치 개발



- 소수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심의위원의 다양화
- 화장실 등 불법촬영단속으로 고객 인권침해 방지 및 안전관리강화
- 모범거래모델 도입, 청렴인권 이행 서약서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노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 소비자의 권익증진 노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소비자중심경영 (CCM) 4회 연속 재인증 및 우수기업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

○ 인권경영 전파 및 구성원의 인권 의식 제고

- 폭언 등 특이민원 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 혐오차별 예방 등 전 직원 인권 교육 및 인권 존중 캠페인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

IV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정의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 파악 및 평가하는 절차”

2. 평가유형

※ 참고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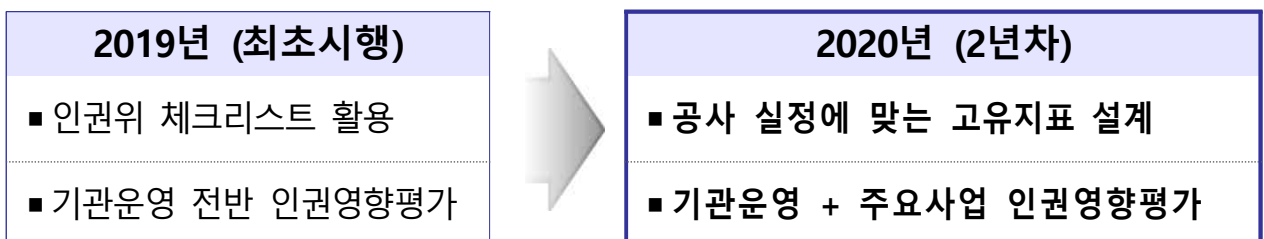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기업활동 전반	포괄적 분야 평가(인권경영 체제, 산업 안전, 고용, 노동권 등)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특정사업	해당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전 파악 및 분석

-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기업활동
 -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10개 분야에 대한 인권위 체크리스트 활용
 - 인권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한 고유지표 설계
- (주요사업)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적·규범적요인 등을 분석해 지표 자체 구성 및 의견수렴

3. 전년대비 시사점 및 개선사항

시 사 점

- ◆ 인권영향평가 최초 시행으로 기관 운영 전반 인권경영 수준 측정
- ◆ 인권위 체크리스트 활용 평가로 기관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가 상존
- ◆ 차년도 '공사 고유지표' 설계 및 '주요사업' 유형에 대한 평가 필요



※ 인권영향평가 최초 도입기인 '19년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분야만 시행, '20년 주요사업 분야까지 확대 실시 ※ 향후 사업부서별 1개 사업을 필수로 평가 체계로 확대 예정

4. 인권영향평가 고유지표화 및 체크리스트 설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설계방법

-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 상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사 경영활동 및 사업에 맞는 고유지표 설계

(전년도 '해당없음' 답변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정·보완)

□ 조정내용 : [33개 항목 - 158개 지표] → [31개 항목 - 148개 지표]

No	분야	항목	세부지표	No	분야	항목	세부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0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6
2	고용상의 비차별	4	17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	1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	14	8	환경권 보장	4	18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3	17	9	소비자인권보호	2	9
5	산업안전 보장	4	17	10	정보인권보호	2	10

○ 조정항목 ※ 세부 평가내용은 [붙임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참조

No	분야	항목	비고	No	분야	항목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5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4. 인권경영 성과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5.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2. 고용상 남녀비차별				2. 모니터링 실시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1 이동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8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접근의 원칙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 이행				3. 환경정보의 공개		
		4. 노동조합 부재시 태안적 조치	삭제			4. 비상계획 수립		
4	강제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통합	9	소비자인권 보호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대체	
		2. 지회사 협력회사 강제아동노동 예방						
	아동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금지	삭제				2. 제품 결함 시 조치	10-2 이동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 조치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	정보인권보호	1.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분리	
						2. 소비자 사생활 보호		

○ **조정사유**

구 분	주 요 내 용
삭제	③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항목 제외 ☞ 복수 노동조합 존재
통합	④ 기존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2가지 분야 통합 ☞ 공사 정관에 미성년자 임직원 결격사유 명시 등 이미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 많음
대체	⑨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의 '소비자보호 법령준수', '제품결함 시 조치' 항목과 업무 연관이 높은 부서로 소관 변경 ☞ 경영기획부 → 스마트도시정보부(버스정보안내기 타지자체·해외 수출, 엔지니어링 감리 사업)
분리	⑩ 기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의 하위 정보보안 항목 별도 분리 ☞ 정보보안에 대한 인권 침해 평가 분리 신설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사업선정 : 체육사업(수영장)** * 적합성 분석 기준 활용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사업 선정

○ **선정사유**

- 올해 스포츠계 폭행 이슈로 우리 공사 체육강사의 인권침해 위험요인 사전 파악을 위한 체육강사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실시(2020. 9월)
-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특히 수영은 타종목에 비해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있으며, 강사·안내·청소·시설관리 등 직원 유형도 다양

○ **평가지표** ※ 세부 평가내용은 [붙임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참조

No	분 야	항 목	No	분 야	항 목
1	공정운영	① 이용자 권리 침해 방지	4	근무자 인권보호	① 근로자 보호용품 제공
		② 이용자 권리 공개			②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③ 이용자 성희롱, 성폭력 방지			③ 인권침해 구제조치
		④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			④ 근로자 복리후생
		⑤ 민원 및 불편사항 조치결과			⑤ 감정노동 심리안정 지원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①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5	지역주민 환경보장	① 오염물질 배출 방지
		② 사회적 약자 안내시설			② 지역경제 영향 파악
		③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			③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④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④ 정기적 환경정보 공개
		⑤ 기타 사회적 약자 편의			⑤ 감시장치 설치 안내
3	안전보장	① 시설운영 안전관리			
		② 불법촬영 방지 등 인권침해 예방			
		③ 환경기준 준수 제품 구입			
		④ 안전요원 배치			
		⑤ 비상상황 대처 모의훈련			

5. 평가절차

구 분	담당부서(기구)	내 용	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지표 등 세부계획 마련 평가계획 전 부서 공유 	'20. 11월
▽			
평가지표 설계	전략기획팀 (검토: 인권경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항목 및 지표 고유화 설계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20. 11월 중순
▽			
평가지표 교육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담당자 교육 전 임직원 평가지표 공유 	'20. 11월 말
▽			
자체평가 실시	소관부서 (총괄: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검증(평가 총괄부서) 	'20. 12월 초
▽			
최종평가 및 심의	인권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신뢰성 검토 등 최종평가 권고의견 제시 최종심의 의결 	'20. 12월 중순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홈페이지 등 공개 	'21. 1월 限

▽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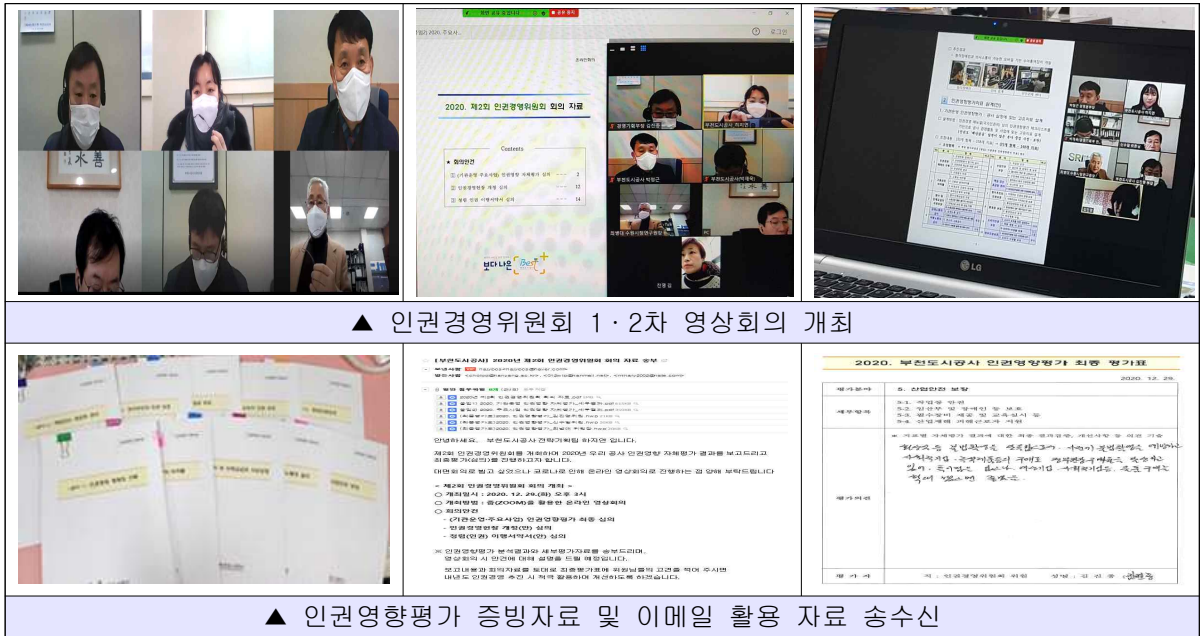
1. 평가개요

- 평가유형 :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기간 : 2020. 11. 25. ~ 12. 11. (결과검증 : 12. 14. ~ 12. 18.)
- 평가방법 : 소관부서 자체평가 ⇨ 결과검증 및 분석(전략기획팀)
⇨ 최종평가 및 심의(인권경영위원회)
- 평가 점수산정 체계

※ 점수체계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1점	0.5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점수 산정식					
$\text{종합(분야별) 점수} = 100 \times \frac{(\text{'예' 응답수} \times 1) + (\text{'보완필요' 응답수} \times 0.5)}{\text{항목별 세부지표수} - (\text{'정보없음'}, \text{'해당없음' 응답수})}$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및 평가 심의

- 회의일시 : 2020. 11. 23.(월) 16:00~17:00 / 12. 29.(화) 15:00~16:00
- 회의방법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 사전 자료제공
- 참석자 : 5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회의내용 : 인권영향지표 설계(안) 검토 / 인권영향평가 최종심의 등



▲ 인권경영위원회 1·2차 영상회의 개최

▲ 인권영향평가 증빙자료 및 이메일 활용 자료 송수신

□ 위원별 평가분야 구성 : **분야별 내·외부 위원 중복 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No	평가분야	평가위원	
		외부위원	내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최○○	박○○
2	고용상의 비차별	신○○	박○○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신○○	박○○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신○○	박○○
5	산업안전 보장	최○○	김○○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최○○	김○○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김○○	김○○
8	환경권 보장	김○○	김○○
9	소비자인권보호	김○○	김○○
10	정보인권보호	김○○	박○○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No	평가분야	평가위원	
		외부위원	내부위원
1	공정운영	최○○	박○○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김○○	박○○
3	안전보장	최○○	김○○
4	근무자 인권보호	신○○	김○○
5	지역주민 환경보장	김○○	김○○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결과 ※ 지표별 세부 평가결과 '붙임' 참조

□ 종합평점 : **96.9점** / 100점 ※ 전년대비 **3.3점 상승**

구분	종합평점	세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예 (1.0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내용	96.9점	148개	108(↑12)	7(↓7)	0	9(↓6)	24(↓9)
전년평가	93.6점	158개	96	14	0	15	33
산식	$96.9 = 100 \times \frac{(108(\text{예}) \times 1) + (7(\text{보완필요}) \times 0.5)}{148(\text{총 지표수}) - (9(\text{정보없음}) + 24(\text{해당없음}))}$						

□ 분야별 점수

No	분야	항목	점수	No	분야	항목	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96.5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87.5
2	고용상의 비차별	4	100.0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	83.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	100.0	8	환경권 보장	4	92.3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3	100.0	9	소비자인권보호	2	-
5	산업안전 보장	4	100.0	10	정보인권보호	2	95.0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No	분 야	항 목	점수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종합평점			96.9	108	7	0	9	24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 계	96.5	27	2	-	-	1
		1. 인권존중 정책선언	91.7	5	1	-	-	-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6	-	-	-	-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100.0	4	-	-	-	1
		4. 인권경영 성과	92.8	6	1	-	-	-
		5. 구제절차 마련	100.0	6	-	-	-	-
2	고용상의 비차별	소 계	100.0	14	-	-	-	3
		1. 고용상 비차별	100.0	5	-	-	-	-
		2.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0	6	-	-	-	-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3	-	-	-	-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	-	-	-	-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소 계	100.0	14	-	-	-	-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0	4	-	-	-	-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0	5	-	-	-	-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 이행	100.0	5	-	-	-	-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소 계	100.0	12	-	-	-	5
		1. 강제노동 금지	100.0	8	-	-	-	-
		2. 연소자 고용금지	100.0	4	-	-	-	2
		3. 자회사 협력회사 강제·아동노동 예방	-	-	-	-	-	3
5	산업안전 보장	소 계	100.0	16	-	-	-	1
		1. 작업장 안전	100.0	4	-	-	-	1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4	-	-	-	-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100.0	5	-	-	-	-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3	-	-	-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 계	87.5	3	1	-	-	2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0	2	-	-	-	2
		2. 모니터링 실시	75.0	1	1	-	-	-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소 계	83.3	2	1	-	7	-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1	-	-	6	-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75.0	1	1	-	1	-
8	환경권 보장	소 계	92.3	11	2	-	2	3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7.5	3	1	-	-	1
		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3	-	-	2	-
		3. 환경정보의 공개	100.0	2	-	-	-	1
		4. 비상계획 수립	100.0	3	1	-	-	1
9	소비자인권 보호	소 계	-	-	-	-	-	9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	-	-	-	-	6
		2. 제품 결함 시 조치	-	-	-	-	-	3
10	아동노동의 금지	소 계	95.0	9	1	-	-	-
		1.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7.5	3	1	-	-	-
		2.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6	-	-	-	-

□ 자체평가 분석 종합의견

- 인권영향평가 2년차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상의 체크리스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개선하여 우리 공사 실정에 맞도록 고유지표화를 시도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의 2가지 평가유형인 '기관운영' 평가와 '주요사업' 평가를 모두 시행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준수사항을 대부분 잘 이행해 대체적으로 고득점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 취약 분야였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정보인권보호' 분야를 보완·개선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하였음

- 전년대비 상승분야 주요 개선사항

분야	2019년	2020년	주요 개선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3.7점	96.5점 (↑2.8점)	인권경영실천협의체 구축, 공공갈등관리 수립
5. 산업안전 보장	93.7점	100점 (↑6.3점)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ISO45001 인증 획득
10. 정보인권보호	87.5점	95.0점(↑7.5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최고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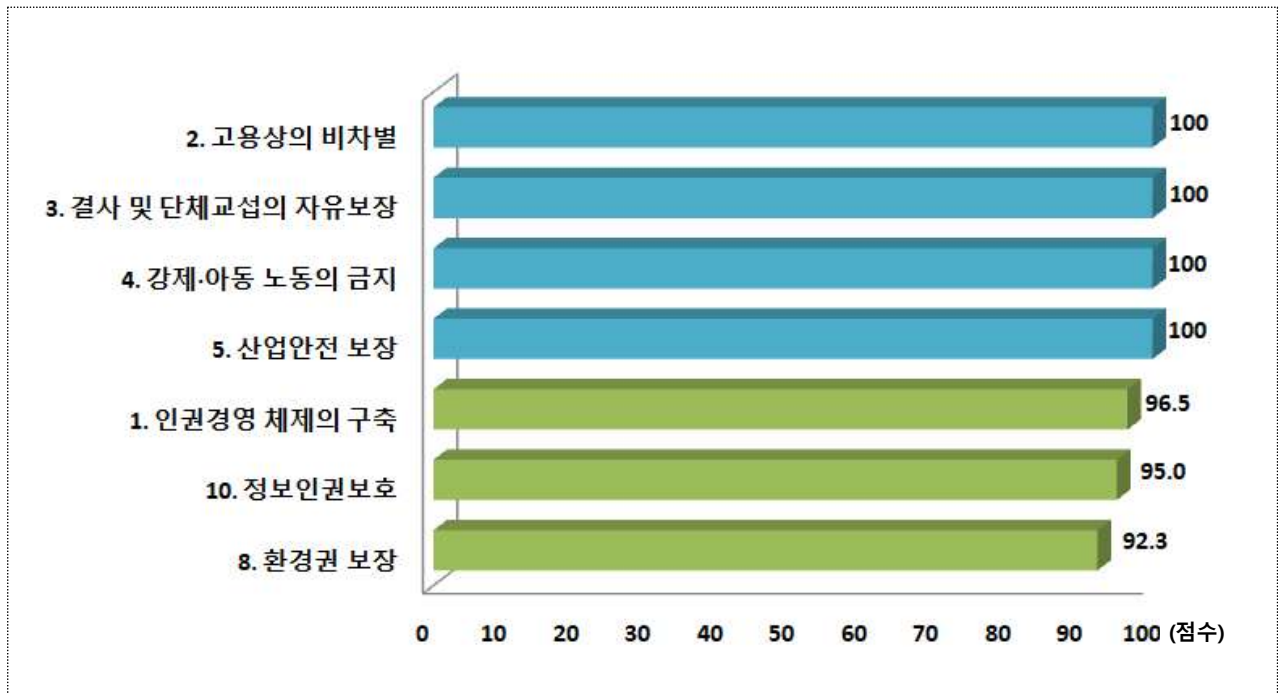
- 전년도 취약분야 주요 개선사항

분야	2019년	2020년	주요 개선사항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0.0점	87.5점 (↑17.5점)	모범거래모델 도입,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66.6점	83.3점 (↑16.7점)	지역주민 대상 신규사업 사전 의견수렴 등

-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의 경우 지표 내용이 '제품', '상품' 등 제조·판매용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공사 운영사업 성격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소관부서 자체평가 시 해당 없음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지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전략기획팀(인권담당)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현황점검 추진·비고란 기재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올해 사회적으로 스포츠 폭행 이슈가 있었고 주민·고객, 체육강사, 안내직원, 환경미화직원, 유관단체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많고 다양하여 인권리스크 발생이 높은 체육시설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해 인권경영 수준을 측정하고 예방적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긍정적 의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별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분석

◎ 평가결과 「상위 7개」 지표



주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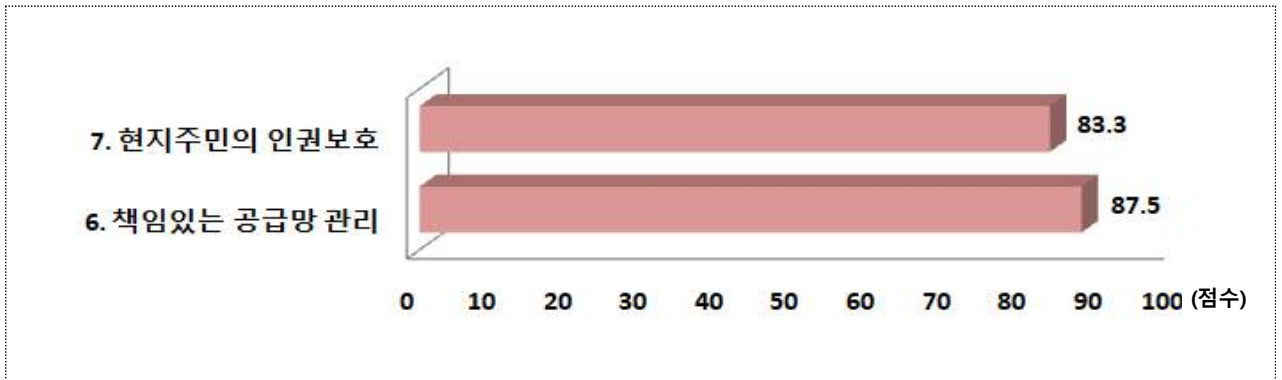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활동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제도화하고 잘 이행하고 있어 만점(100점)을 획득함
- ‘산업안전 보장’,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정보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분야 모두 전년대비 평가 점수가 상승하여 90점 이상 고득점이 산출되었으며,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음

- 분야별 상승요인

분야	2019년	2020년	증감	주요 개선사항
5. 산업안전 보장	93.7점	100점	↑6.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위생·정리정돈 상태, 안전 점검 및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주기적 실시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노사, 외부전문가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3.7점	96.5점	↑2.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 타기관(시흥·인천연수)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인권경영실천 상호협약을 선언함 ▶ 주요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분야	2019년	2020년	증감	주요 개선사항
10. 정보인권보호	87.5점	95.0점	↑7.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감독 및 인권교육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공개
8. 환경권 보장	91.6점	92.3점	↑0.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추진 환경정보 공개등록을 통한 대내외 공개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상시훈련 실시, 체육시설 코로나 대응 고객참여 훈련 실시

◎ 평가결과 전년도 「취약항목 개선」 지표



주요원인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의 경우 전년도 취약점을 개선·보완하여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명시적 인권보호준수 서약 및 저작권 침해 사전 절차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함

- 분야별 상승요인

분야	2019년	2020년	증감	주요 개선사항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0.0점	87.5점	↑17.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거래모델 도입 계약 체크리스트 시행, 수의계약 개선 사회적 배려기업과 계약 확대, 계약체결 진행 시 부정당제재업체 확인 ▶ 공사 시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확보 및 교육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66.6점	83.3점	↑16.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 경영성과보고회, 사업관련 토론회·설명회 등 주민 경영참여 지속 확대 ▶ 저작권 침해 및 기술특허 부정사용 사례 안내, 市기술분야자문단 사업추진 시 활용 권장

◎ 평가결과 「해당 없음」 지표

- ‘소비자인권보호’ 분야의 경우 지표 내용 대부분이 ‘제품’, ‘상품’ 등 제조·판매용 단어가 사용되어 공사 사업 성격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지표 평가내용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 변경·평가 해당없음 항목多)

☞ 차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해 평가 필요

- 우리 공사는 2013년 ‘고객중심경영’을 도입하여 지방공기업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올해의 CCM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만큼 해당 지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마다 평가를 받고 통과해 CCM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소비자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은 CCM인증 자동 취소)

◎ 지표별 보완분야 개선계획

No	분 야	개선계획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추가 ■ 향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실시
2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시 인권보호 준수 서약 등 모니터링 방안 추가
3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활용 사전 검토 절차 마련
4	환경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정보 수집 활용(평가) 방안 마련 ■ 주민참여 비상훈련 사업장별 추가 확대
5	정보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사무 관련 명시적 인권보호 서약 체결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결과 ※ 지표별 세부 평가결과 '붙임' 참조

□ **종합평점 : 97.0점** / 100점

구분	종합평점	세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예 (1.0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내용	97.0점	75개	62	4	0	6	3
산식	$97.0 = 100 \times \frac{(62(\text{예}) \times 1) + (4(\text{보완필요}) \times 0.5)}{75(\text{총 지표수}) - (6(\text{정보없음}) + 3(\text{해당없음}))}$						

□ **시설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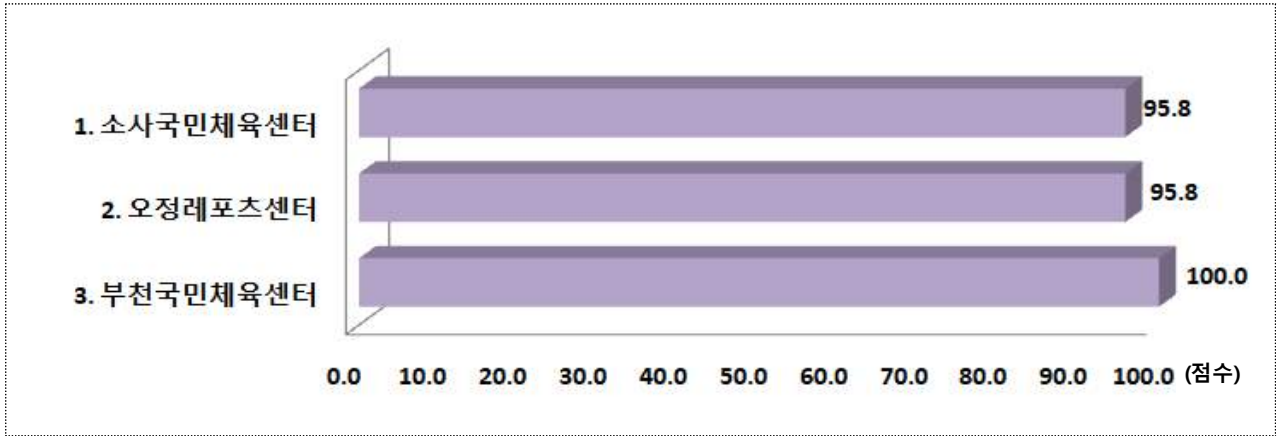
No	분야	항목	점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종합평점			97.0	62	4	-	6	3
1	소사국민 체육센터	소 계	95.8	22	2	-	-	1
		1. 공정운영	90.0	4	1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90.0	4	1	-	-	-
		3. 안전보장	100.0	5	-	-	-	-
		4.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2	오정 레포츠센터	소 계	95.8	22	2	-	-	1
		1. 공정운영	100.0	5	-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90.0	4	1	-	-	-
		3. 안전보장	90.0	4	1	-	-	-
		4.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3	부천국민 체육센터 (신규시설)	소 계	100.0	18	-	-	6	1
		1. 공정운영	100.0	3	-	-	2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100.0	3	-	-	2	-
		3. 안전보장	100.0	3	-	-	2	-
		4.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 자체평가 분석 종합의견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최초 시행으로 올해 사회적으로 스포츠 폭행 이슈가 있었던 체육시설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해 인권경영 수준을 측정하고 체육강사 인권의식 실태 설문조사와 함께 예방적 대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긍정적 의의가 있음
-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주민, 유관단체의 체육선수·체육행사, 우리 공사 직원인 체육강사직, 안내직, 환경미화직, 행정직, 시설직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많고 다양하며 특히 수영의 경우 타 종목에 비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지역사회 파급 영향도 커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인권리스크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설임
-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는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큰 규모의 수영시설로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이용하며,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체육강사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결과 근무자 인권 보호, 안전관리,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 부천국민체육센터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신규 준공된 수영시설로 시설공사 시 공사 전문직원이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인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명예감독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오픈 전 시민모니터단 현장방문으로 시설전학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관리의 의의가 있음
- 향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시 부서별 1개 이상 시설을 필수로 평가하여 사업별 인권리스크 예방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분석

◎ 사업별 점수



- 분야별 추진 주요사항

분야	주요 사항
1. 공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모집종목·인원, 요금, 할인제도, 환불 등 사전 정보제공 ▶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산재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및 교육 실시, 상담 창구 운영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현장 소통게시판 등 활용 민원 해결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점자안내판 설치 및 수영장 장애인 입수장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샤워장·탈의실 등 보유 ▶ 고령자, 신체미약자,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 비상대피로 안내판을 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로 표시
3. 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시설 안전상태 수시 점검 ▶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 이용 주기적 점검으로 불법촬영 예방 ▶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부권장구매율 목표 달성 ▶ 안전근무자 상시 2인 이상 배치 운영
4. 근무자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안전화, 절연복 등 안전보호용품 제공 ▶ 매월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재난관리행동매뉴얼 안내 ▶ 체육강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 마련 ▶ 팀장을 감정노동자 보호관리자로 지정, 심리 상담 등 운영
5. 지역주민 환경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체육시설 인근지역 시장조사 반영 ▶ 센터별 자문위원회 및 소통의 날, 소통게시판 등 주민 의견 수렴 ▶ 센터별 방역소독, 수질, 공기질 법정점검 결과 게시 안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환경정보 대외 공개

◎ 사업별 보완분야 개선계획

No	시설	개선계획
1	소사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소리 결과 부분적 시행에 대한 개선 조치 ■ 영어 등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추진
2	오정레포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등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추진 ■ 주민(고객) 참여 비상훈련 추가 확대
3	부천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시설로 개장 후 정보없음 체크 항목에 대한 인원리스크 관리 필요 *코로나로 개장 잠정 연기

VI 인권영향평가 최종평가 심의 결과 및 환류

□ 총 평(권고 및 자문)

구분	내용
공통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개선하였고 평가지표를 기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대체·분리하고 유사한 부분은 통합하여 조정 근거를 제시하는 등 공사 실정에 맞게 잘 조정하였음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취약점으로 평가된 부분을 보완·개선한 노력이 돋보여 인권경영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앞으로도 지금처럼 근무자와 고객의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으면 함
외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수요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방적 대처를 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의 의도이자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며, 부천도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잘 운영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지표가 이전보다 줄어들면 불성실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부천도시공사가 개선한 부분은 기관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대체·분리하고 유사한 부분은 통합하여 조정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작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나온 개선의견도 수렴하여 잘 반영함 ■ 어떤 관계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갈등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이해도가 높아야 갈등이 사전에 조정되고 능력도 향상되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나 매뉴얼 제작을 고민해 보았으면 함 ■ 청렴(인권)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시 직인 날인은 형식적일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표자 서명을 직접 받는 것을 권장함 ■ 어떤 관계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갈등관리를 위해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함 ■ 요즘 사회적으로 경비원·미화원 등 현장직원의 휴게공간을 지하 구석진 곳이 아닌 오픈된 좋은 공간에 마련하고 있으니 향후 평가 시 휴게공간의 위치도 살펴보았으면 함


구분	내용
외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평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항목이 있었는데 마침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복수노조가 있어 대안적 조치가 필요 없으니 삭제해도 좋고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도 잘 통합하였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업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1회 이상 공유 자리를 만들면 좋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인권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매뉴얼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므로 매뉴얼화 여부를 체크하였으면 함 근무자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알지 못하는 고객의 오해로 불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휴게공간 앞 근로자 휴게시간과 고객 협조 문구를 부착해도 좋음
내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차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갈등관리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며, 금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기업들과 함께 국무총리상을 만큼 앞으로도 고객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잘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기 바람 고객이용이 많은 화장실 등 불법촬영을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녹색제품 등의 구매로 정부권장 구매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했으면 좋겠음 모든 공사 시 외부업체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확인 점검도 체크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매뉴얼 제작과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편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과제 도출

No	개선과제	담당부서	이행현황	이행기간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경영기획부 (전부서 협조)	추진 중	'21. 연중
2	소비자인권보호 지표 개선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추진 중	'21. 7월
3	공공부문 사전 갈등관리 계획 수립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완료	'20. 12월
4	명시적 인권보호준수 서약 보완	경영기획부 (회계팀)	완료	'20. 12월
5	인권 확산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추진 중	'21. 1월
6	(체육사업)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레포트사업부	추진 중	'21. 상반기

붙임1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 202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통계표

No	분 야	항 목	점수	평가결과					No	분 야	항 목	점수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총 점			96.9	108	7	0	9	24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 계	96.5	27	2	-	-	1	5	산업안전 보장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0	4	-	-	-	-
		1. 인권존중 정책선언	91.7	5	1	-	-	-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0	5	-	-	-	-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6	-	-	-	-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3	-	-	-	-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100.0	4	-	-	-	1			소 계	87.5	3	1	-	-	2
		4. 인권경영 성과	92.8	6	1	-	-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3.3	2	-	-	-	2
		5. 구제절차 마련	100.0	6	-	-	-	-			2. 모니터링 실시	75.0	1	1	-	-	-
2	고용상의 비차별	소 계	100.0	14	-	-	-	3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소 계	83.3	2	1	-	7	-
		1. 고용상 비차별	100.0	5	-	-	-	-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1	-	-	6	-
		2.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0	6	-	-	-	-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75.0	1	1	-	1	-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3	-	-	-	-			소 계	92.3	11	2	-	2	3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	-	-	-	-	3	8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7.5	3	1	-	-	1
소 계	100.0	14	-	-	-	-	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3	-	-	2	-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0	4	-	-	-	-	3. 환경정보의 공개	100.0			2	-	-	-	1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0	5	-	-	-	-	4. 비상계획 수립	87.5			3	1	-	-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 이행	100.0	5	-	-	-	-	소 계	-	-	-	-	-	9		
		소 계	100.0	12	-	-	-	5	9	소비자인권보호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	-	-	-	-	6
		1. 강제노동 금지	100.0	8	-	-	-	-			2. 제품 결함 시 조치	-	-	-	-	-	3
		2. 연소자 고용금지	100.0	4	-	-	-	2			소 계	95.0	9	1	-	-	-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3. 자회사 협력회사 강제아동노동 예방	-	-	-	-	3	10	정보인권보호	1.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7.5	3	1	-	-	-	
		소 계	100.0	16	-	-	-			1	2.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0	6	-	-	-	-
		1. 작업장 안전	100.0	4	-	-	-			1							
5	산업안전 보장																

□ 202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6	5.5	91.7

항목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실천협의체 구축 (부천-시흥-인천 연수구) "인권보호 및 존중 선언" 언론 보도자료 인권경영실천 업무협약서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인권경영실천 협약 기관장 주도 인권캠페인 실시 언론 보도자료 인권경영확산·인권존중 캠페인 추진 계획(경영-15691호)
3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타기관과 인권경영실천협의체 구축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인권경영실무협의체 회의 (경영-15126호, 경영-9073호) 개선계획 -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추가
4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관련 부조리 관행 및 제도 개선 등 공동협력 인권경영실천 업무협약서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공유 언론보도자료 배포 공사 홈페이지 및 SNS 게시 인권경영 우수사례 공유 (경영-13606) 언론보도자료 및 게시 사진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현장 재검토·개정 인권경영현장 개정 추진 (경영-15300호)
소 계			5	1	-	-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6	6	100.0

항목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경영위 최종심의, 최고경영진 보고, 외부 공개·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공유·전파 (경영-16864호, -17059호, 경영-704호, -3126호)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최종평가 절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경영-15360호)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경영-14637호)
4 기관(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 평가절차 준수 체육·레포트 강사 인권실태 조사 실시 갈등 진단체계 및 대응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레포트 강사 인권실태 조사결과(경영-11793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진단표, 관리카드 등(경영-16125호)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준수(넓은 의미의 업무계약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근거 마련 ※ 매년 인권영향평가 및 평가내용 보완·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6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경영-14637호)
소 계		6	-	-	-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수립 공공 갈등관리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정 (제6장 인권침해 구제 등)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진단표, 관리카드 등(경영-16125호)
2 회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부서 지정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15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3 회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 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보고 (경영-15126호)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계획 (경영-732호)
4 회사는 인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리스크 사전파악 및 대처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체육-레포트 강사 인권실태 조사결과(경영-11793호) 2020.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경영-14637호)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응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자회사, 협력회사 없음) 	-
소 계		4	-	-	-	1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7	6.5	92.8

항목 1-4. 인권경영 성과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최종 심의 인권영향평가 최종평가심의 (경영-17053호) 인권경영 이행결과 보고 (경영-704호)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시민모니터단 대상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최종평가심의 (경영-17053호)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경영-15126호)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정기 보고 인권경영 우수사례 타기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경영-15126호) 인권경영 우수사례 공유 (경영-13606호)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성과 대내외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3번과 동일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5	보고는 회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종료 후 종합결과보고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결과 종합보고 (경영-704호) 개선계획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결과보고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 및 주요활동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이행결과 종합보고 (경영-704호)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최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최종평가심의 (경영-17053호)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경영-15126호)
소 계			6	1	-	-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6	6	100.0

항목 1-5. 구제절차 마련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이유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구제절차 규정화 ■ 시민모니터단 대상 성과 및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 ■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창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7조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 시민모니터단 성과결과보고 (경영-992호)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창구 안내 (경영-5668호)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준수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7조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 규정 제정 시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검토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접근성 제고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7조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 온라인 게시 화면 첨부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사실에 대한 통지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8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5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요청 시 적극 협조 내용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 외 인사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전사적 조치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33조 (시정과 조치)
소 계		6	-	-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2-1. 고용상 비차별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시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사규정 제7조 (채용원칙)
2	회사는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시 불필요 조건 미제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조(신규채용)
3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조건상 차별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5조 취업규정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4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배치 및 승진 시 노동자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5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 퇴직, 해고 관련 노동자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사규정 제34조 (신분보장)
소 계			5	-	-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6	6	100.0

항목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이유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시 남녀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84조 (모집과 채용)
2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 동일한 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85조 (임금)
3 회사는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조건상 차별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5조 취업규정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4 회사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배치 및 승진 시 남녀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86조 (교육, 배치, 승진)
5 회사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 퇴직, 해고 관련 남녀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87조 (정년퇴직 및 해고)
6 회사는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 미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87조 (정년퇴직 및 해고)
소 계		6	-	-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본문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유사업무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회사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업무편의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3	회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동일가치 동일 노동 임금 지급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소 계			3	-	-	-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	-	-

항목 2-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 해당없음 (외국인 고용 없음)	-
2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 해당없음 (외국인 고용 없음)	-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 해당없음 (외국인 고용 없음)	-
소 계			-	-	-	-	3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설립 허용 준수 ■ 단체협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	회사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활동시간 보장 준수 ■ 단체협약 제9조 (활동보장)
3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운영에 따른 편의 제공 협조 ■ 단체협약 제13조 (시설편의 제공)
4	회사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동수 노사협의회 구성 분기별 운영 ■ 단체협약 제67조 (구성과 운영)
소 계			4	-	-	-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 활동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 탈퇴 고용 조건 금지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 고용조건 금지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조합 활동에 차별 대우 금지 준수 ■ 단체협약 제15조 (인사원칙)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행위 관련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소 계		5	-	-	-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 동수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협약 제67조 (구성과 운영)
2 회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요청 시 정보 제공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협약 제13조 2 (자료제공)
3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불가피한 해고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 협의 절차 마련 및 고용안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단체협약 제24조 (고용안정의 노력)
4 회사는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섭시 쌍방의 결정권자 참석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협약 제65조 (교섭위원)
5 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협의사항 구체적 이행방안 노사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협약 제68조 (협의사항)
소 계		5	-	-	-	-		

분야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8	8	100.0

항목 4-1. 강제노동 금지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2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 및 노동자 배려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 의결정), 제17조(근로조건 의명시)
3	회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제약 목적 각종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4조
4	회사는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 근무 시 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5	회사는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6	회사는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3절 출근 및 결근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 신청 후, 면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취업규정 제65조 (의원면직)
소 계			8	-	-	-	-		

분야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4-2. 연소자 고용 금지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이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 미만 연소자 고용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6조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2 회사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해외 고용 없음) 	-
3 회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정관 제1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4 회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금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정관 제1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5 회사는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명서 확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6조(구비서류)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해외 고용 없음) 	-
소 계		4	-	-	-	2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	-	-

항목 4-3.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아동노동 예방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아동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자회사나 협력사 없음) 	-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아동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자회사나 협력사 없음) 	-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 부정당업체 계약금지 준수 - 인력충원 공개채용 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인사규정 제9조 (채용방법)
소 계		-	-	-	-	3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5-1. 작업장 안전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완료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리정돈상태, 위생 상태 교육 및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사업장 대상 밀폐공간 프로그램 교육 및 시설물 정리정돈 점검 결과보고 (안전기술팀-1539호)
2 회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점검 시 비상탈출구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설 연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완료 보고 (안전기술팀-658호)
3 회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 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리정돈상태, 위생 상태 교육 및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사업장 대상 밀폐공간 프로그램 교육 및 시설물 정리정돈 점검 결과보고 (안전기술팀-1539호)
4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정리정돈상태, 위생 상태 교육 및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사업장 대상 밀폐공간 프로그램 교육 및 시설물 정리정돈 점검 결과보고 (안전기술팀-1539호)
5 회사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됨) 	-
소 계		4	-	-	-	1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5-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함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 사회적 약자 주차 시설, 승강기, 휠체어, 진입로, 유도표지 등 설치 운영 ■ 사진첩 별도 첨부 	
2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위험한 사업 미근로 준수 ■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을 한 노동자 요청 시 근무지 변경 준수 ■ 공사 취업규정 제88조 (임산부의 보호 및 출산전후 휴가 등) 	
4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 사회적 약자 주차 시설, 승강기, 휠체어, 진입로, 유도표지 등 설치 운영 ■ 사진첩 별도 첨부 	
소 계			4	-	-	-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5-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만 이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2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전기술팀-2534호)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활동인 위험성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부천도시공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안내 (안전기술팀-2072호)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담당자와 안전·보건 협력업체와의 합동점검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산업안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상태 점검 일정 안내 (안전기술팀-232호)
4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활동인 위험성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부천도시공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안내 (안전기술팀-2072호)
5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정 제74조 ■ 복리후생규정 제4조
소 계			5	-	-	-	-		

분야 5. 산업안전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5-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상해보험가입 -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규정 제13조, 제16조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경영기획부 (운영지원팀)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단체상해보험 가입 -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방법 안내 경영기획부-3174(2020.03.05.)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도시공사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안전기술팀-431호)
소 계			3	-	-	-	-		

분야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2	2	100.0

항목 6-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행을 요구한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현장 제시 ■ 사회적배려기업과 수의계약 확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배려계층인권향상)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운영에 관한 개선 계획(안)보고 (경영기획부-3997호)
2	회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협력사 없음) 	-
3	회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현장 제시 ■ 부당계약 자가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거래모델 도입 「계약 체크리스트」 개선 및 시행 안내 (경영기획부-10796호)
4	회사는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준수 ■ 계약체결 시 인권경영현장 제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p>※ 지표에서 정의하는 협력사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거래모델 도입 「계약 체크리스트」 개선 및 시행 안내 (경영기획부-10796호)
소 계			2	-	-	-	2		

분야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2	1.5	75.0

항목 6-2. 모니터링 실시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협력업체 작업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리스트 및 교육일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기술팀-2160(2020.10.20.) "외부업체의 공사/수리 위탁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 안내" ■ 개선계획 - 계약 시 인권보호 준수 서약 등 모니터링 방안 추가
2	회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제의 단절을 고려한다.	경영기획부 (회계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 진행시 부정당제재 업체(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업체) 여부 확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부-10796(2020.08.21.) "모범거래모델 도입 관련 「계약체크리스트」 개선 및 시행 안내"
소 계			1	1	-	-	-		

분야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1	1	100.0

항목 7-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본문 완료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협의사례 및 관련 정보 없음 	-
2	관련 법령에서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도시개발부 경영기획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의 경영참여 지속 확대 주민대상 사업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경영-9220호) 시민모니터단 대상 성과보고, 주거복지 온택트 토론회 등 (경영-992호, 안전-1967호)
3	회사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구매 사례 및 관련 정보 없음 	-
4	회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재산권 확보사례 및 관련 정보 없음 	-
5	회사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협의사례 및 관련 정보 없음 	-
6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담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사례 및 관련 정보 없음 	-
7	법령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으로 인한 이주사례 및 관련정보 없음 	-
소 계			1	-	-	6	-		

분야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2	1.5	75.0

항목 7-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없음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분쟁 방지·대응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안내 및 저작권 침해 주의 ■ 개선계획 - 지적재산권 활용 사전 검토 절차 마련
2 회사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부정적 사례를 알리고 '부천시'의 기술분야 자문단을 사업추진 시 적극 활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감사사례 알림(감사팀-1452호)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없음 (사업상 해당 사례 없음) 	-
소 계		1	1	-	1	-		

분야 8. 환경권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3.5	87.5

항목 8-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안전기술팀-387호)
2 회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환경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환경정보 공개등록 추진계획 (안전기술팀-1376호) 개선계획 - 환경정보 활용(평가) 안 마련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리더 정기회의 및 에너지절약 추진협의회를 통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목표달성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리더 정기회의 및 에너지 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안전기술팀-151호, 1414호)
4 회사는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제품개발 사업 없음) 	-
5 회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경영기획부 (인재육성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에너지절약,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 관련 정기교육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에너지리더 교육 및 인화성물질 교육 등 실시 (안전기술팀-151호, 2578호) 주거환경 개선 교육결과보고 (경영기획부-14503호)
소 계		3	1	-	-	1		

분야 8. 환경권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8-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본문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안전기술팀-387호)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사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사례 및 정보 없음 	-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시개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사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사례 및 정보 없음 	-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친환경 경영 추진 계획 (안전기술팀-387호)
5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등록증권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도시공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증권(보험) 안내 (안전기술팀-1103호)
소 계			3	-	-	2	-	

분야 8. 환경권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2	2	100.0

항목 8-3. 환경정보의 공개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정보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공개등록 준수를 통한 대내외 공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공개등록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정보' 제출 (안전기술팀-739호)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공개등록 준수를 통한 대내외 공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 환경사고발생 및 관련 정보제공요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공개등록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정보' 제출 (안전기술팀-739호)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환경정책 개발 관련 사업 없음) 	-
소 계		2	-	-	-	1		

분야 8. 환경권 보장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3.5	87.5

항목 8-4. 비상계획 수립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만 응답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보고 (안전기술팀-380호)
2	회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상반기 실시현황 제출 (안전기술팀-1533호)
3	회사는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체육시설(소사센터) 코로나 대비 고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재난대비 상시훈련 상반기 실시현황 제출 (안전기술팀-1533호) 언론보도자료 첨부 개선계획 - 주민참여 비상훈련 추가확대
4	회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정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보고 (안전기술팀-380호)
5	회사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기술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인근지역 대형병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객이 많은 체육시설은 인근병원과 의료지원 MOU 市·병원·경찰서·소방서 등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소 계			3	1	-	-	1	

분야 9. 소비자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	-	-

항목 9-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사업운영관련 법령·조례에 따른 세부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체육사업 등 운영규정
2 회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 사업운영 적정성, 법규조례 위배여부 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수탁 타당성 자료 - 조사용역 계획, 언론보도 자료 등 ■ 범죄예방우수주차장 인증
3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서비스 이용 및 환불·보상 등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월별 운영 안내문 ■ 시설 이용규약 게시 사진
4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공정위 CCM인증 취득·유지 - 소비자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인증 자동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 CCM 최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5 회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 사업 운영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사진 첨부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주차장 수어통역장치 개발 ■ 웹접근성 인증 획득 ※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 및 시설이용에 불편없음 추구
소 계		-	-	-	-	6		

분야 9. 소비자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	-	-

항목 9-2. 제품 결함 시 조치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만 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평가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제안제도 등 의견수렴 제도 개선 추진 - 서비스삼진아웃제 시행 및 잘못된 서비스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게시 ■ 사업별 고객자문위원회 운영 직원·주민·고객 제안제도 운영 ■ 서비스 삼진아웃제 운영 및 잘못된 서비스 보상 예산 수립 등 불만처리 관련 자료 첨부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규정·제도 개정 대내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제도 개정 대내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안내문, 문자, SNS,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경영기획부 스마트 도시정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게시 ■ 소비자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평가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삼진아웃제 시행 및 잘못된 서비스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게시 ■ 서비스 삼진아웃제 운영 및 잘못된 서비스 보상 예산 수립 등 불만처리 관련 자료 첨부
소 계		-	-	-	-	3		

분야 10. 정보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3.5	87.5

항목 10-1.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이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취급자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공사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보고 (스마트도시정보부-4228호)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정보부-256호)
2	회사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취급자대상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보안담당 직원 인권교육 실시 개인정보유출, CCTV 등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침해예방교육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도시정보부 혐오차별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스마트도시정보부-6868호)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계획 (경영-15691호)
3	회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과업지시서 內 개인정보보호 서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공사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과업지시서) (스마트도시정보부-7980호) 개선계획 - 계약 시 인권보호 명시 서약
4	회사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결과보고(스마트도시정보부-2109) 內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
소 계			3	1	-	-	-		

분야 10. 정보 인권보호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6	6	100.0

항목 10-2. 소비자 사생활 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회사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공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https://www.best.or.kr/fmcs/209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https://www.best.or.kr/fmcs/209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https://www.best.or.kr/fmcs/209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https://www.best.or.kr/fmcs/209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공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항목 ※ https://www.best.or.kr/fmcs/209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정보지원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장비(DRM, 웹 방화벽)를 이용한 유출방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공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https://www.best.or.kr/fmcs/209
소 계			6	-	-	-	-	

□ 2020. 체육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통계표

No	시 설	항 목	점수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 없 음	해 당 없 음
총 점			97.0	62	4	-	6	3
1	소사국민체육센터	소 계	95.8	22	2	-	-	1
		① 공정운영	90.0	4	1	-	-	-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90.0	4	1	-	-	-
		③ 안전보장	100.0	5	-	-	-	-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2	오정레포츠센터	소 계	95.8	22	2	-	-	1
		① 공정운영	100.0	5	-	-	-	-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90.0	4	1	-	-	-
		③ 안전보장	90.0	4	1	-	-	-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3	부천국민체육센터	소 계	100.0	18	-	-	6	1
		① 공정운영	100.0	3	-	-	2	-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100.0	3	-	-	2	-
		③ 안전보장	100.0	3	-	-	2	-
		④ 근무자 인권보호	100.0	5	-	-	-	-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0	4	-	-	-	1

□ 202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체육사업_소사센터) 지표

분야 1. 체육시설(소사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4.5	90.0

항목 ① 공정운영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답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적 이용 제한, 권리계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요금, 할인제도, 등록, 환불, 연기 등 사전 정보 제공 ■ 수강등록 사전 상담 가능 및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매월 모집안내 및 센터 내 이용안내문 부착
2 공사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공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모집종목, 모집 인원과 이용조건(할인, 환불, 연기 등) 공지 및 고객센터 스헌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매월 모집안내 및 센터 내 이용안내문 부착 ■ 고객센터스헌장 게시
3 공사의 체육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담당관 및 수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사건 상신신고 접수안내(경영기획부-9990호) ■ 성희롱예방·대처매뉴얼 (경영기획부-14236)
4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소리, 소통게시판 등을 활용한 고객민원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센터 내 소통게시판을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 추진
5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조치결과를 고지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소리 민원답변 시 민원인 발송, 소통게시판에 답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 - 고객의 소리의 경우 결과는 부분적 시행에 대한 개선 조치
소 계		4	1	-	-	-		

분야 1. 체육시설(소사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4.5	90.0

항목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사의 체육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리프트, 엘리베이터, 장애인 수영장 입수장비, 휠체어 보유 ■ 시설 내 설치 완료
2	공사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 2개국어 비상대피로 안내게시판 게시 ■ 개선계획 - 외국인(영어 등) 안내문 제작 추진 예정
3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신체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아쿠아테크 및 장애인반 운영 (회원모집안내문 및 홈페이지)
4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반자,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이용료 감면 ■ 근로복지공단과 재활스포츠 협약 산재근로자 지원 ■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1조 ■ 재활스포츠지원사업 협정서
5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장애인복지과-15783호) ■ 장애인 입수장비 설치 사진
소 계			4	1	-	-	-	

분야 1. 체육시설(소사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③ 안전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의 설비·시설은 인권·환경·산업안전 등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상태점검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팀-232(2020.01.20.) ■ 안전기술팀-2121(2020.10.13.)
2	체육시설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단속,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안전기술팀) ■ 각종 법정점검과 수시점검(건축물, 전기, 소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안전기술팀-2196) 등 ■ 시설별 추진시기가 다름
3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권장정책 구매목표비율 제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부-118847(2020.09.15.)
4	체육시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의거 매시간대 안전근무자 2인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23조
5	비상시 상황 대처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계획서 수립에 따른 상·하반기 소방 합동 훈련 실시 ■ 소사센터 고객참여 코로나 대응 비상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사업부-231(2020.01.09.) ■ 언론보도자료
소 계			5	-	-	-	-	

분야 1. 체육시설(소사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④ 근무자 인권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부분 만 응답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안전화, 절연복 등 안전보호용품 제공 및 현장 비치 ■ 매년 예산에 반영
2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전기술팀) ■ 레포츠사업부-8113 (2020.10.26.)
3	근로자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강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구제절차 마련 ■ 팀장을 감정노동자 보호관리자로 지정하고 매뉴얼 비치 ■ 체육강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구제절차 마련 (경영-732, 11793) ■ 감정노동자 보호관리 및 매뉴얼(경영기획부-13641)
4	체육시설 청소원, 경비원 등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旣 설치 완료 ■ 사업장내 휴게 공간 보유
5	감정노동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 감정노동자보호 대응매뉴얼 수립 ■ 감정노동자 보호관리 및 매뉴얼(경영기획부-13641)
소 계			5	-	-	-	-	

분야 1. 체육시설(소사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해당사항 없음	-
2	체육시설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기존에 없던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시장조사 반영	■ 배드민턴프로그램 운영 계획 (체육-937 등) ■ 수입급분할프로그램운영계획 (체육-4868)
3	체육시설은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스포츠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및 소통게시판 활용	■ 레포츠사업부-11609 (2019.12.18.) 등
4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www.env-info.kr)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 안전기술팀-1376 (2020.06.22.)
5	체육시설은 감시장치 설치 시 이를 안내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既 게시 완료 (센터 특성상 수영장, 에어로빅장, 탈의실 등의 내부에 CCTV 설치 불가)	■ 출입구에 CCTV 설치 안내문 게시
소 계			4	-	-	-	1		

□ 202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체육사업_오정센터) 지표

분야 2. 체육시설(오정레포츠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① 공정운영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답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적 이용 제한, 권리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인 등 사회적약자 비차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모집안내 공지 및 센터 내 이용안내문 부착
2 공사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공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모집종목, 모집인원과 이용조건(할인, 환불, 연기 등) 공개 준수 고객서비스현장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매월 모집안내 및 센터 내 이용안내문 부착 고객서비스현장 게시
3 공사의 체육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내 성희로 및 성폭력 관련 담당관 및 수시 교육 및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성폭력사건 상시신고 접수안내(경영기획부-9990호) 성희롱예방·대처매뉴얼(경영기획부-14236)
4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소리 및 소통게시판 활용 등 고객민원 수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센터 내 소통게시판 활용
5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조치결과를 고지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소리 등 민원답변 및 센터내 소통게시판 게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소리 민원답변 및 소통게시판 민원대장 작성 및 답변 게시
소 계		5	-	-	-	-		

분야 2. 체육시설(오정레포츠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4.5	90.0

항목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 불완 전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사의 체육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리프트, 엘리베이터, 장애인 수영장 입수장비, 휠체어 보유 ■ 시설 내 설치 완료
2	공사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 2개국어 비상대피로 안내게시판 게시 ■ 개선계획 - 외국인(영어 등) 안내문 제작 추진 예정
3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수영 장애인반, 아쿠아 프로그램 등 운영
4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반자,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이용료 감면 ■ 근로복지공단과 재활스포츠 협약 산재근로자 지원 ■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1조 ■ 재활스포츠지원사업 협정서
5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개 직영센터 수영장 내 장애인 입수장비 배치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장애인복지과-15783호) ■ 장애인 입수장비 설치 사진
소 계			4	1	-	-	-	

분야 2. 체육시설(오정레포츠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4.5	90.0

항목 ③ 안전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이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의 설비·시설은 인권·환경·산업안전 등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상태점검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팀-232(2020.01.20.) ■ 안전기술팀-2121(2020.10.13.)
2 체육시설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단속,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 (안전기술팀) ■ 각종 법정점검과 수시점검 (건축물, 전기, 소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 (안전기술팀-2196) 등 ■ 안전점검 결과보고
3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권장정책 구매목표비율 제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부-118847(2020.09.15.)
4 체육시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의거 매시간대 안전근무자 2인 이상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23조
5 비상시 상황 대처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계획서 수립에 따른 상·하반기 소방 합동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사업부-255(2020.01.09.) ■ 개선계획 - 주민참여 비상훈련 추가확대
소 계		4	1	-	-	-		

분야 2. 체육시설(오정레포츠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④ 근무자 인권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만 일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보호용품 제공 준수 ■ 매년 예산 반영 ■ 레포츠사업부-8218(2020.10.29.) (안전화 등 구입) 등
2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매월 교육결과 제출) ■ 레포츠사업부-9003(2020.11.25. (월1회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3	근로자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방법으로 방문접수 외 전화, 전자우편, 설문조사 등 접근성 제고 ■ 팀장을 감정노동자 보호관리자로 지정하고 매뉴얼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부-11152 (2020.08.31.)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7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제2항
4	체육시설 청소원, 경비원 등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 직원 전용 휴게시설 설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8㎡ 현업직원 휴게실 보유
5	감정노동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준수 ■ 직원 심리상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경영기획부-13641) ■ 감정노동자 보호관리 및 매뉴얼
소 계			5	-	-	-	-	

분야 2. 체육시설(오정레포츠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정보완 결 없음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 해당사항 없음	-
2	체육시설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 타지역 프로그램 및 자체 프로그램 이용요금과의 형평성 사전조사 준수 반영	■ 레포츠사업부-4310(2019.05.13.) 등
3	체육시설은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 지역주민·이용회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레포츠사업부-11724(2019.12.19.) 자문위원회 결과보고(년4회)(2020년 코로나19로 미개최)
4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 수영장 수질, 실내 공기질 검사 및 결과 공개 준수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www.env-info.kr) ■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10조의 규정 수질검사 성적서 공개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 안전기술팀-1376 (2020.06.22.)
5	체육시설은 감시장치 설치 시 이를 안내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문화체육팀)	○					■ CCTV 설치 안내표지판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거 안내문 게시
소 계			4	-	-	-	-		

□ 202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체육사업_부천국민센터) 지표

분야 3. 체육시설(부천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① 공정운영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적 이용 제한, 권리계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개장연기 ■ 개장 전 시민모니터단 현장 방문 사전점검 및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설은 되었으나 안내문(이용수칙 등) 개장 후 게시 예정 ■ 신규운영시설 시민모니터점검(경영-992)
2	공사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공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개장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매월 모집안내 및 센터 내 이용안내문 부착 ■ 고객센터서비스현장 게시
3	공사의 체육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이 비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공사 성희롱.성폭력 처리 매뉴얼 등 비치 및 수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사건 상시신고 접수안내(경영기획부-9990호) ■ 성희롱예방.대처매뉴얼(경영기획부-14236)
4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운영 및 전화 등을 활용한 민원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전화 접수를 활용한 고객과 소통 추진
5	공사 체육시설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조치결과를 고지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 민원답변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및 전화 접수를 활용한 고객과 소통 ■ 개장 후 시행
소 계			3	-	-	2	-	

분야 3. 체육시설(부천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 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증빙, 개선계획 등)
		예	불만 없음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사의 체육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 장애인 휠체어 비치 ■ 장애인 입수장치 비치 ■ 장애인용 옷장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사진 첨부
2 공사 체육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사인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 설치 ■ 소화전 사용 매뉴얼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사진 첨부
3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후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장애인반 프로그램 개설 예정
4 공사 체육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사용료 50% 할인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1조 ■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경영기획부-5668) 등 각종 홍보물 게시 지원
5 그 밖의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개 직영센터 수영장 내 장애인 입수장비 배치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 전용 탈의실 및 샤워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장애인복지과-15783호) ■ 장애인 입수장비 등 설치 사진
소 계		3	-	-	2	-		

분야 3. 체육시설(부천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3	3	100.0

항목 ③ 안전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부분 만 이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체육시설의 설비·시설은 인권·환경·산업안전 등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상태점검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팀-232(2020.01.20.) ■ 안전기술팀-2121(2020.10.13.)
2	체육시설의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단속,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 (안전기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과-5246(2019.9.30.) ■ 안전기술팀-2196(2020.10.26.)
3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인권·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권장정책 구매목표비율제도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부-118847(2020.09.15.)
4	체육시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개장 후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개장연기
5	비상시 상황 대처 매뉴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계획서 수립에 따른 상·하반기 소방 합동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사업부-231(2020.01.09.)
소 계			3	-	-	2	-		

분야 3. 체육시설(부천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5	5	100.0

항목 ④ 근무자 인권보호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본문 불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장 상태점검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술팀-232(2020.01.20.) ■ 안전기술팀-2121(2020.10.13.)
2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안전기술팀) ■ 각종 법정점검과 수시점검(건축물, 전기, 소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안전기술팀-2196) 등 ■ 시설별 추진시기가 다름
3	근로자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을 감정노동자 보호관리자로 지정하고 매뉴얼 비치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매뉴얼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획부-13641(2018.11.26.) ■ 경영기획부-9990(2020.8.3.)
4	체육시설 청소원, 경비원 등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휴게실 설치(지하1층)(탁자, 의자, 냉장고, 캐비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포츠사업부-3426(2020.05.06.) ■ 레포츠사업부-8847(2020.11.20.)
5	감정노동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준수 ■ 직원 심리상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경영기획부-13641) ■ 감정노동자 보호관리 및 매뉴얼
소 계			5	-	-	-	-	

분야 3. 체육시설(부천국민체육센터)

구분	배점	득점	평점
점수	4	4	100.0

항목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세부지표		소관부서	답변결과					추진현황	비고 (중방, 개선계획 등)
			예	불완전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 해당사항 없음	-
2	체육시설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수영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 신규 시설 ■ 건립공사 시 공사 직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되어 부 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 이용 만족도 향상 추진 	■ 부천국민체육센터 명예감독관 (체육진흥과-11115호)
3	체육시설은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전 시민모니터단 현장 방문 사전점검 및 의견수렴 ■ 개장 후 스포츠센터 자문위원회 및 소통게시판 활용 	■ 신규운영시설 시민모니터점검 (경영-992)
4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www.env-info.kr) ■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 안전기술팀-1376 (2020.06.22.)
5	체육시설은 감시장치 설치 시 이를 안내하고 있다.	레포츠사업부 (생활체육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 게시 완료 (센터 특성상 수영장, 탈의실 등의 내부에 CCTV 설치 불가) 	■ 출입구에 CCTV 설치 안내문 게시
소 계			4	-	-	-	1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규정

제정 2019.10.29. 규정 제69호

개정 2020.09.18. 규정 제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 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 본권 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 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 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 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 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고 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공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금지하고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구제조치) 공사는 사업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3조(인권경영 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2. 인권영향평가 이행
3. 인권교육 이행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6조(인권교육) ①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 정책, 제도
2. 인권침해 행위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 실천·점검 의무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2.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3.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 등”이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8.>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직원 및 공사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8.]

제2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지) 사장이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공사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전자우편,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로 공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심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하를 접수해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권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종결)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암시하거나 널리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

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0.29.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18. 규정 제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제28조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책임자 확인
		소속	성명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권보호와 증진, 공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정부, 경기도, 부천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부천시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첨단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가치를 창출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